

## 1. 개정이유

항공종사자 등이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닐 경우 자격증명을 당 연취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566호, 2021. 12. 7. 공포, 2022. 6. 8. 시행)됨에 따라,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을 정하는 한편, 형식증명 검사대상의 제도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에 대한 산업계 현 실태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제한형식증명 인증대상 명확화(안 제20조, 제37조)

그간 법에서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제한형식증명 대상을 수색구조, 산 불진화 및 예방업무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 나. 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범위의 명확화(안 제27조)

수입항공기의 검사범위에 제작과정의 검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직접 제작하는 과정이 아닌 동일한 품질의 항공기를 제작할 수 있는 품질·제작관리체계를 확인하여 양산능력을 확인토록 명확히 하였으며, 항공안전협정 체결 국가 간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다. 예외적으로 감항증명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대상 변경 (안 제36조)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 및 권고에 따르면 항공기의 감항증명은 등록국에서 발행토록 하며, 양국가의 임대차 권한 이양이 합의된 경우에

만 외국항공기에 감항증명을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자 함

라. 조종사 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비행경력 인정방법 명확화(안 제77조)  
개인이 자가용 항공기를 이용하여 비행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교관 없이 개인이 훈련하여 비행경력을 채우는 경우에도 응시경력 부여가 가능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어, 조종사가 훈련한 비행경력의 증명을 자격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또 다른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한 비행훈련을 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비행경력을 인정방법을 명시

마.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입출항 신고서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절감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세관 등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82조제4항)

바.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 제출서류 완화  
(안 제284조, 제304조, 서식)

연구개발을 위해 시험비행이 필요하여 제작사 등에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신청을 하는데, 현재 시험비행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시험비행을 거쳐 제작완료 후 제출 가능한 서류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험비행에 필요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한 제출서류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범위 및 대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형식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형식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사항에 대한 검사만 해당한다.

1.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3. 항공기등의 완성 후의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업무
2.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업무
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구급활동 업무
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수산업 업무
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업무

- 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
- 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
- 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

제25조에 제3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소음적합증명서를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급기록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를 “품질 및 제작관리체계에 대한 검사”로 하고 하단에 “다만,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제작증명 또는 동등한 증명을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법 제5조에 따라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 이양의 적용 특례 대상항공기

제3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각 목은 삭제한다.

-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제77조제1항제1호 중 “조종사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을 “조종사는 다음 각 목의 비행경력”으로 하고, 같은 호

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명 업무 범위 내의 비행경력 :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다.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비행경력 :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라. 법 제37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 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받으려는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③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교관은 제98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발급받은 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조종교관으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182조제4항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을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2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경량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시험비행을 위한 운용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
2.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계획서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5. 경량항공기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 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0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시험비행을 위한 운용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

(이하 “초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
2.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계획서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5. 경량항공기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 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그 밖에 시험비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310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의 360도 선회 등 조종력을 회복할 수 없는 안전고도 미만으로의 비행 행위(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만 해당한다)

제313조제3호 중 “지방항공청장”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중 “한정심사는”을 “심사는”으로, “동등한 수준 이상의”를 “동등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한”으로, “기종의”를

“기종”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 18).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분내용란 중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을 “자격증명 취소”로 하고,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명 취소

별표 42 제2호가목15)의 처분내용란 중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을 “자격증명 취소”로 하고,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격증명 취소

별표 44의2 제10호의 처분내용란 중 “1차 위반: 효력 정지 60일”을 “조종자증명 취소”로 하고, 같은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조종자증명 취소

별표 47 비고 하단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29호 및 제33호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하여 다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서류상의 검사만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으며 최대 감면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별지 제7호, 제9호, 제23호의2, 제38호, 제41호, 제44호, 제51호, 제98호, 제110호, 제119호, 제12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형식증명승인 신청서

## Application for Type Certificate Validation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5일 (Durations)
------	------	----------------------------

신 청 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 ] 항공기 (Aircraft)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형식증명번호 Certificate No.	
[ ] 발동기 (Engine)	제작일련번호 Product Serial No.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 ] 프로펠러 (Propeller)	제작자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형식증명자료집번호 Type Certification Data Sheet No.	
비 고 Remarks		

「항공안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을 받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Article 21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26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Type Certificate Validation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Applicant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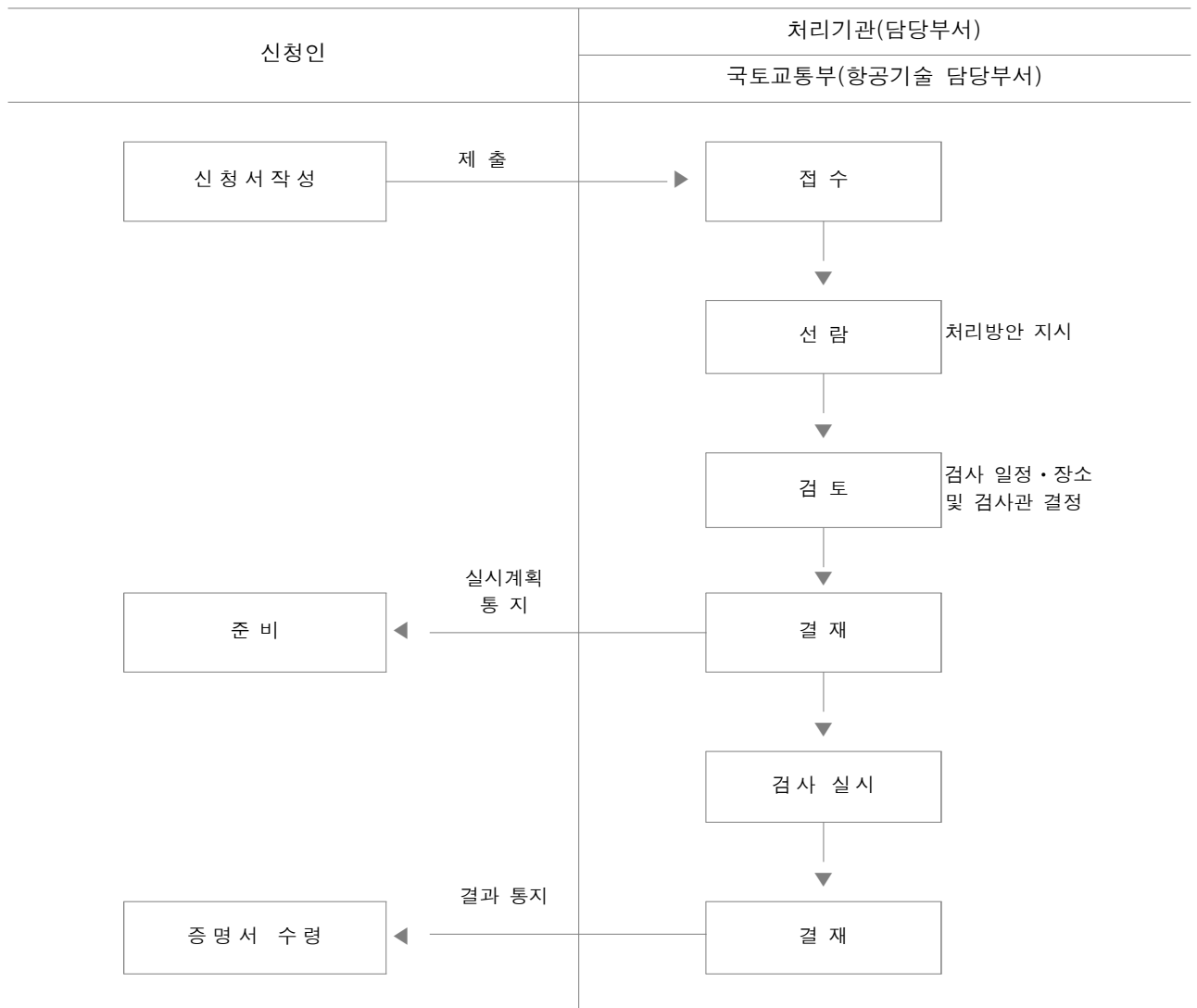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1.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서(Copy of Type Certificate)	수수료(Fee)
	2. 형식증명자료집(Copy of Type Certification Data Sheet)	
	3. 설계 개요서(Copy of Design Description Documents)	「항공안전법
	4.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opy of Compliance Check List and/or Data demonstrating compliance, or equivalent)	시행규칙」 제32
	5. 비행교범 또는 운용방식을 적은 서류(Copy of Flight and/or Operation Manual)	1조에서 정한
	6. 정비방식을 적은 서류(Copy of Documents describing Maintenance Procedures)	수수료
	7.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Copy of Reference Documents)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부가형식증명승인 신청서 (Application for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Validation)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Durations) (20 Days)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 ] 항공기 (Aircraft)  [ ] 발동기 (Engine)  [ ] 프로펠러 (Propeller)	감항분류 Airworthiness category	
	형식 또는 모델 Type or Model	
	제작일련번호 Product Serial No.	
	제작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Manufacturer	
	제작자주소 Address of Manufacturer	
	설계자 성명 또는 명칭 Name of Designer	
	설계변경내용 Description of Modification	
비고 Remarks	부품의 판매여부 Intent to sell the Parts	

「항공안전법」 제2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가형식증명승인을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 21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1, Article 29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I hereby apply for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 Validation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신청인  
Applicant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Signatur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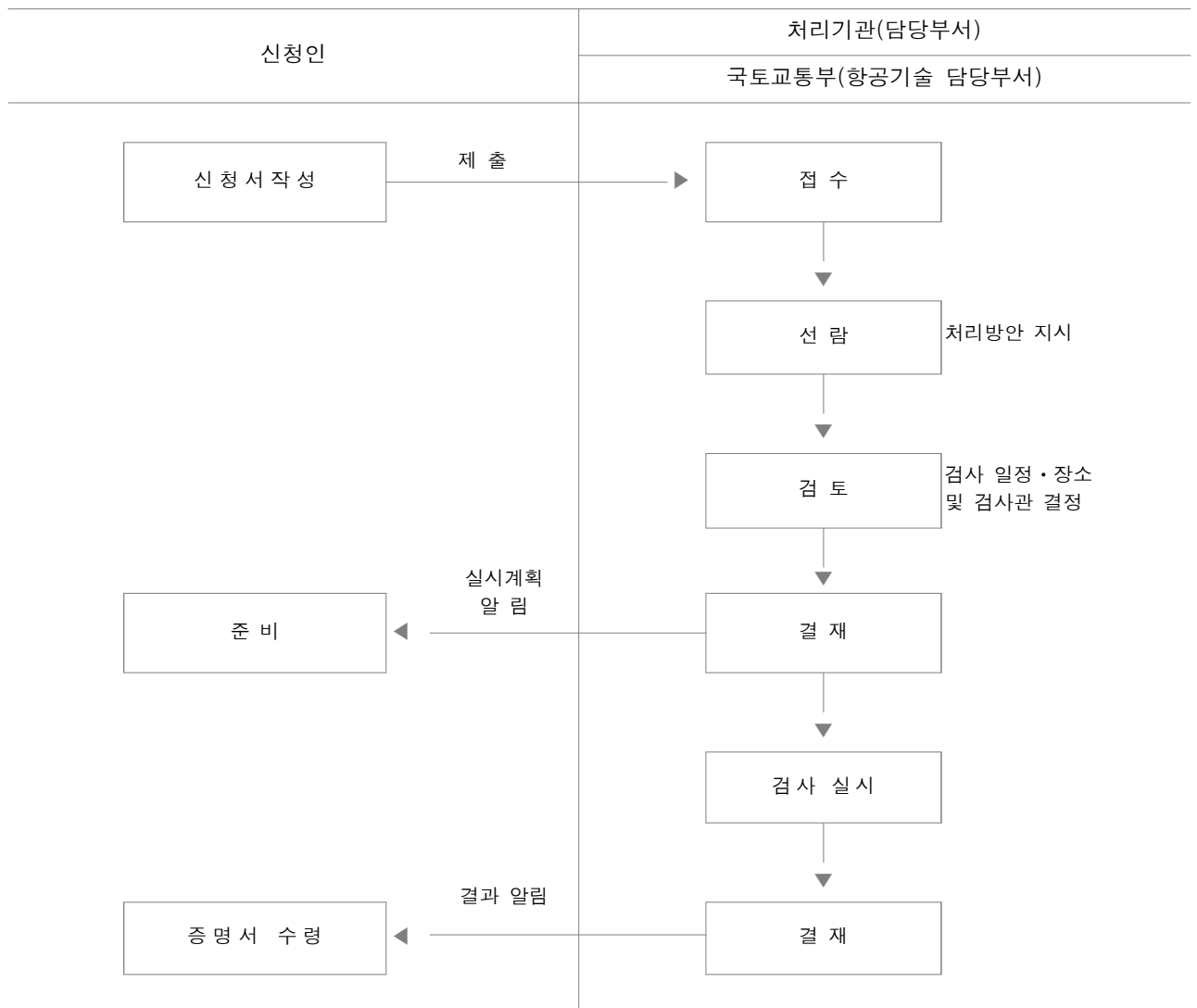
**Attention: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첨부서류 (Documents)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정부의 부가형식증명서(Copy of Supplemental Type Certificate)</li> <li>2. 변경되는 설계 개요서(Copy of Changed Design Description Documents)</li> <li>3. 변경되는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Copy of Compliance Check List and/or Data demonstrating compliance, or equivalent)</li> <li>4.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비행교범(운용방식을 포함한다)(Copy of Supplemental Flight Manual including operation limitations)</li> <li>5. 변경되는 설계에 따라 개정된 정비교범(정비방식을 포함한다)(Copy of Supplemental Maintenance Manual including Instructions for Continued Airworthiness)</li> <li>6.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Copy of Reference Documents)</li> </ol>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일
------	------	-----	------------

신청인	성명	
	주소	

항공기	제작자 성명(명칭)	제작일자
	종류	국적 및 등록기호
	형식	제작일련번호
	감항증명유효기간	소음기준적합증명번호

사유

「항공안전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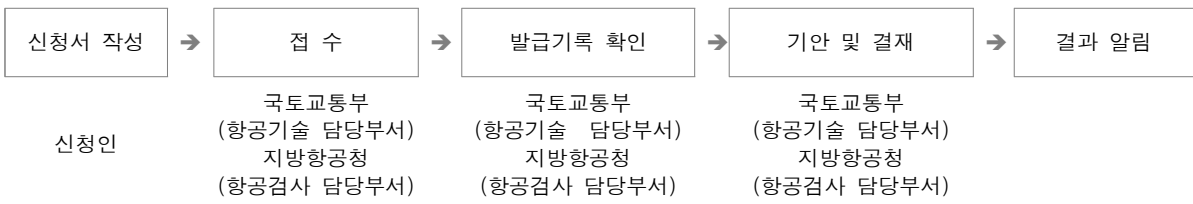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 음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앞 쪽)

I. 발행국 (NAME OF STATE)	사진 (1.5×2cm)
II. 자격명 (TITLE OF LICENCE)	
III. 자격번호 (SERIAL NO. OF THE LICENCE)	
IV. 성명 (NAME)	
IVa. 생년월일 (DATE OF BIRTH)	
V. 주소 (ADDRESS)	
VI. 국적 (NATIONALITY)	
VII. 소지자 서명(SIGNATURE OF HOLDER)	
XII. 한정사항(RATINGS)	

(뒤 쪽)

자적번호(SERIAL NO. OF THE LICENCE)	성명(NAME)
XIII. 특기사항(REMARKS)	
-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ENGLISH PROFICIENCY)	
- LEVEL (~VALID DATE)	
(Originally issued by )	
- 제한사항(LIMITATIONS)	
X. 발급자 서명(SIGNATURE OF OFFICER ISSUING THE LICENCE) 및 발급일(DATE OF ISSUE)	
VIII. 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의 장이 확인·발급함 (ON BEHALF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F THE REPUBLIC OF KOREA)	
IX. 「항공안전법」 제38조제4항·제1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 (THIS LICENCE HOLDER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EXERCISE THE PRIVILEGES OF THE LICENCE IN ACCORDANCE WIT H ARTICLE 38-4 AND 112-4 OF THE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 LE 87-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CT.)	
XI.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직인</span>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54mm×86mm(PVC 카드 또는 전자문서)

(발급번호)

## 자격증명서 유효성확인 증명서

### (Airman License Verification Certificate)

I. 발급국가(Name of State):

II. 발급기관(Authority issuing the License):

III.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

성명(Name)		생년월일(Date of birth)	
국적(Nationality)			

IV. 자격증명 및 한정사항(License and Ratings)

자격번호 (Number)	자격명 (Title)	자격증명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of license)	한정사항 (Ratings)	한정사항 유효기간 (Expiration date of rating)	발급일자 (Date of issue)

V. 항공신체검사증명서(Medical Certificate)

종류(Class)	유효기간(Expiration date)	제한사항(Limitations)

VI.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English Proficiency)

등급(level)	유효기간(Expiration date)	비고(remarks)
		based on the english proficiency level issued by (발급국가명)

VII. 취소 또는 정지사항(Under suspension or revocation):

VIII. 제한사항(Limitations):

(발급자 성명)

(발급 부서명)

(발급자 연락처)

(발급일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직인

## 항공신체검사증명 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Airman Medical Certificate)

□ 신청인 기재사항

발급번호(No.) :

1)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Middle name	2) 생년월일 (Date of birth)	3) 성별(Sex)	4) 응시(Application)
한글(Korean)				남성(Male) <input type="checkbox"/>	최초(Initial) <input type="checkbox"/>
영문(English)				여성(Female) <input type="checkbox"/>	갱신(Renewal) <input type="checkbox"/>
5) 증별 항공신체검사(Class of Medical Certificate applied for)		6) 항공신체검사 잔여유효기간 (Valid Date of Medical Certificate)		7) 국적(Nationality)	
1종(1st) <input type="checkbox"/> 2종(2nd) <input type="checkbox"/> 3종(3rd) <input type="checkbox"/>					
9) 소지자격(Type of license applied for):			■ 자격취득일(Issue Date of Aviation license):		
■ 자격번호(Number of Aviation license):					
10) 주소(Address):			■ 이메일(E-mail):		
■ 연락처(Telephone No.):					
11) 제한사항(Any limitations on medical certificate?)			■ 있음(Yes) <input type="checkbox"/> ■ 없음(No) <input type="checkbox"/>		
■ 세부항목(Details):					
12) 총비행시간(Total flight time):			시간(hours)		
13) 지난 신체검사 이후 비행시간(Flight time since last medical examination):			시간(hours)		
14) 활용목적(Type of flying intended)					
■ 항공운송(commercial air transport) <input type="checkbox"/> (기종 Aircraft currently flown: )					
■ 비행교관(flying instruction) <input type="checkbox"/>					
■ 자가용(private) <input type="checkbox"/>					
■ 기타(others) <input type="checkbox"/> (세부사항 Details: )					
15) 음주여부(Do you drink alcoholic beverages?) 예(Yes) <input type="checkbox"/> 아니오(No) <input type="checkbox"/>					
■ 1주에 평균 며칠이나 술을 마십니까?(How often do you drink in week on average?): 일(day(s))					
■ 술을 마실 때 보통 하루에 얼마나 마십니까?(How much do you usually drink in a day when you drink?): 잔(glass(es))					
16) 흡연여부(Do you smoke tobacco products?)					
■ 경험 없음(never) <input type="checkbox"/>					
■ 과거에 흡연(previously) <input type="checkbox"/> (금연 시작 연도/Date stopped: )					
■ 현재도 흡연(currently) <input type="checkbox"/> (흡연량, 흡연기간/amount and number of years: )					
17) 비처방약을 포함한 현재 사용 중(복용, 투여, 흡입 등)인 약 유무(Do you currently use any medication, including non-prescribed Medication?) 있음(Yes) <input type="checkbox"/> 없음(No) <input type="checkbox"/>					
■ 사용 중인 약이 있다면, 약명, 사용 시작일, 사용량, 사용 사유(진단명)를 기재 (If Yes, state name of medication, date commenced, daily or weekly dose, and cause (diagnosis)):					
18) 주요병력(General and medical history)					
■ 과거 또는 현재 아래 경력이 있으면 '있음', 없으면 '없음'칸에 √ 표기하여 주십시오 (Do you have, or have you ever had, any of the following? Yes or No must be ticked after each)					
있음/없음 (yes)/(No)		있음/없음 (yes)/(No)		있음/없음 (yes)/(No)	
19) 안질 환/안수술 (Eye disorders/eye surge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머리외상 (Head injury or concuss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성병(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안경/콘택트렌즈 착용 (Spectacles and/or contact lensed ever wor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빈번하거나 심각한 두통 (Frequent or severe headache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4) 병원입원(Admission to hospita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지난 신검이후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처방 변화 (Spectacle/contact lens prescriptions/change since last medical exam)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신경계 이상(뇌졸중, 경련, 발작, 마비) (Neurological disorders(stroke, epilepsy, seizure, paralysis, etc))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5) 지난 신검이후 병원방문 (Visit to medical practitioner since last medical examin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고초열, 알레르기 (Hay fever, other allerg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현기증, 실신 (Dizziness or fainting spell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6) 기타 질병, 사고 (Any other illness or injur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천식, 폐질환 (Asthma, lung disea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의식상실 (Unconsciousness for any reas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7) 보험가입 거절 (Refusal of life insuranc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심장 또는 혈관질환 (Heart or vascular disea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6) 말라리아, 풍토병 (Malaria or other tropical disea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8) 의병제대 (Medical rejection from or for military servic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고·저혈압 (High or low blood pressur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7) 정신이상, 심리적 문제 (Psychological/psychiatric trouble of any sor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9) 질병, 상해연금, 보상금 (Award of pension or compensation for injury or illnes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신장결석 또는 혈뇨 (Kidney stone or blood in urin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8) 알콜/약물 남용 (Alcohol/drug/substance abu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항공기사고(Aircraft acciden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당뇨병, 호르몬 이상 (Diabetes, hormone disord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9)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b>여성 (Females only)</b>	
28) 위, 간, 장질환 (Stomach, liver or intestinal troubl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0) 약물을 필요로 하는 비행멀비 (Motion sickness requiring medicatio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1) 부인과적 질환 (Gynaecological disorders(including menstrual))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난청, 귀질환 (Deafness, ear disease)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1) 빈혈, 혈액계 질환 (Anaemia/Sickle cell trait/other blood disorders)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2) 임신여부 (Are you pregnan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코, 목, 발성 이상 (Nose or throat disease or speech disorder)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2) HIV 양성(A positive HIV test)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주석(Remarks): √ 표기한 항목에 대해 상세 기술(시기, 원인, 병명, 수술종류 등) (If yes, state date, cause, diagnosis and name of the operation etc.)					
63) 항공신체검사증명 부적합 판정, 정지 또는 취소 경험(Have you ever had an aviation Medical Assessment denied, suspended or revoked by any licensing authority? If yes, state details.)					
■ 있음(Yes) <input type="checkbox"/> ■ 없음(No) <input type="checkbox"/> ■ 일시(Date)/사유(Reason):					
64) 「항공안전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이 신청서에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과거병력(주요병력)을 적었으며, 만약 본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항공안전법」 제43조에 따른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2년간 이 법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을 수 없으며, 기 발급된 항공신체검사증명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I apply for the airman medical certificate prescribed in Article 43 of Aviation Safety Act and Article 93-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ct. I confirm that all statements and answers provided from me on this application form are complete and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I agree that any falsification on them is considered as a fraudulent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43 of Aviation Safety Act which may result in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medical certificate issued to me, as well as denial of the application for an airman medical certificate for 2 years.					
본인은 이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관련된 과거병력 등 모든 의학적 정보를 국토교통부(항공의학담당 부서) 및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가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의료 기록의 비밀 유지는 보장됩니다). I hereby give my consent that all relevant medical information may be released and submitted to the Medical Assessor of the Licensing Authority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Aerospace Medical Association of Korea. Note : Medical confidentiality will be respected at all times.					
신청인(Applicant):				년(yyyy)	월(mm) 일(dd)
				서명 또는 인(signature)	



##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 Certificate of Aviation English Proficiency

성명 (Name)		국적 (Nationality)	
주소 (Address)			
생년월일 (Date of Birth)			
항공영어구술능력등급 (Aviation English Proficiency Level)			
증명분야 (Field of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조종(Pilot) <input type="checkbox"/> 항공교통관제(ATC) ( <input type="checkbox"/> 비행장관제 <input type="checkbox"/> 접근관제 <input type="checkbox"/> 지역관제) <input type="checkbox"/> 무선통신(Aeronautical Station Operator)		
비고 (Remarks)	This certificate is Issued on the basis of (name of state) english proficiency level.		
유효기간 (Effective Date)			

「항공안전법」 제45조, 제135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항 및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에 따라 위와 같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5 and 135-5 of Aviation Safety Act, Article 100-2 of Enforcement Regulation and ICAO Annex 1, the person above has been found to be properly qualified to Aviation English Proficiency Requirements.

발급일(Date of Issue):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CHAIRMAN OF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REPUBLIC OF KOREA

## 정비조직인증 신청서 Application for an AMO Certificate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25일	
신청인 (Applicant)	성명 또는 명칭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주소 Address	전화(Tel):	
정비하고자 하는 범위 Ratings Applied for			
정비범위 설정사유 Reason for the Ratings			

「항공안전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1조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고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97 of Aviation Act and Article 271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Act, I hereby apply for an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certificate and submit herewith the required documents.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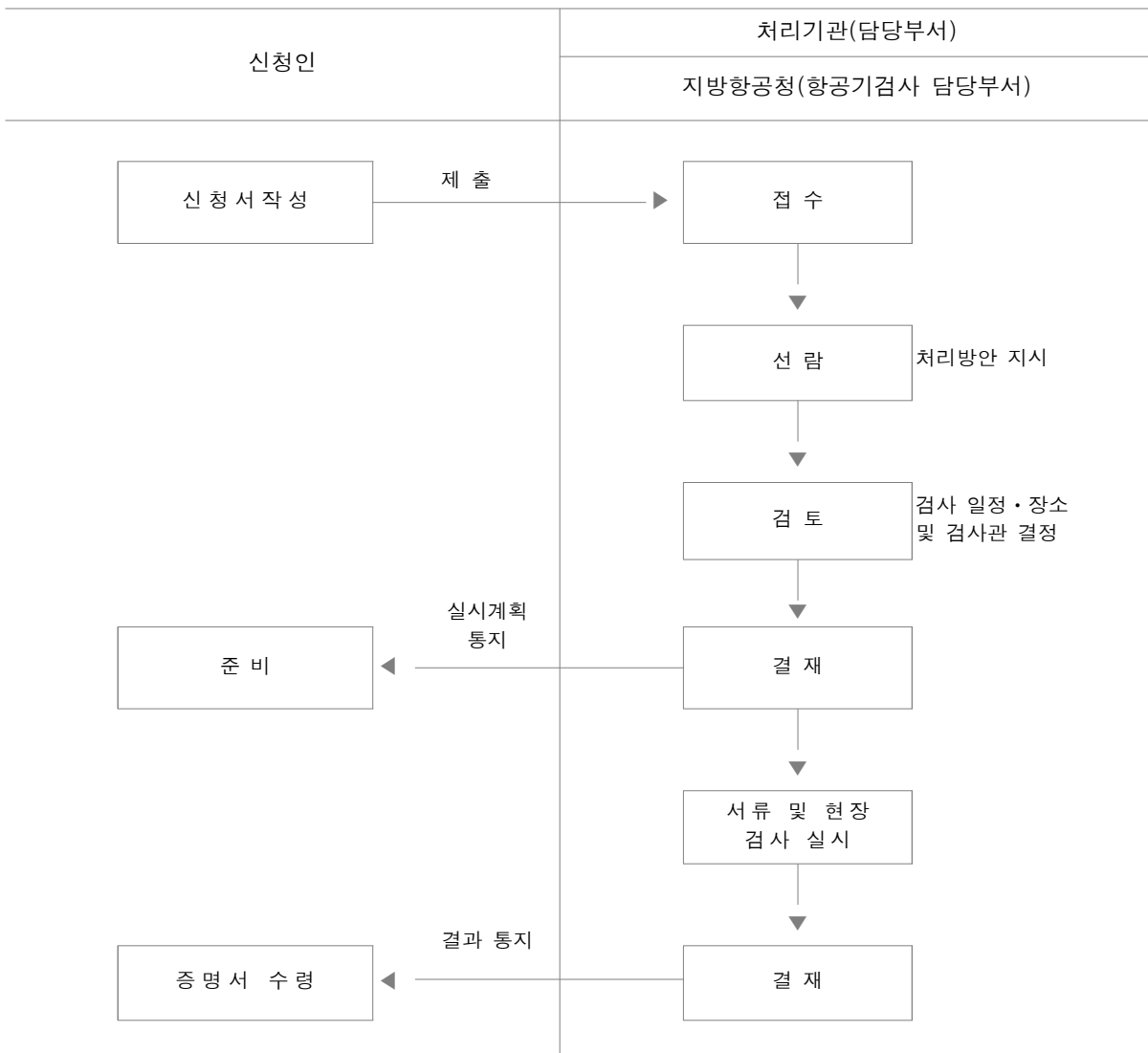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Documents)	1. 정비조직절차교범(copy of Maintenance Organization Procedure Manual, 1.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 2.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방법 및 그 절차, 3. 항공기등·부품등의 정비에 관한 <b>기술관리</b> 및 품질관리의 방법과 절차, 4. 그 밖에 시설·장비 등 국토교통부장관리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 서 정한 수수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경량항공기 시험비행허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10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	형식	
	신고번호	제작번호	
	제작연월일	이착륙형식	좌석수
	설계자	제작자	
	캐노피 제작자	캐노피 형식/크기	캐노피 익면적(투영면적)
시험비행 계 획	일시 또는 기간	구역	
	비행목적/방식	시험비행 횟수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항공안전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4조제2항에 따라 시험비행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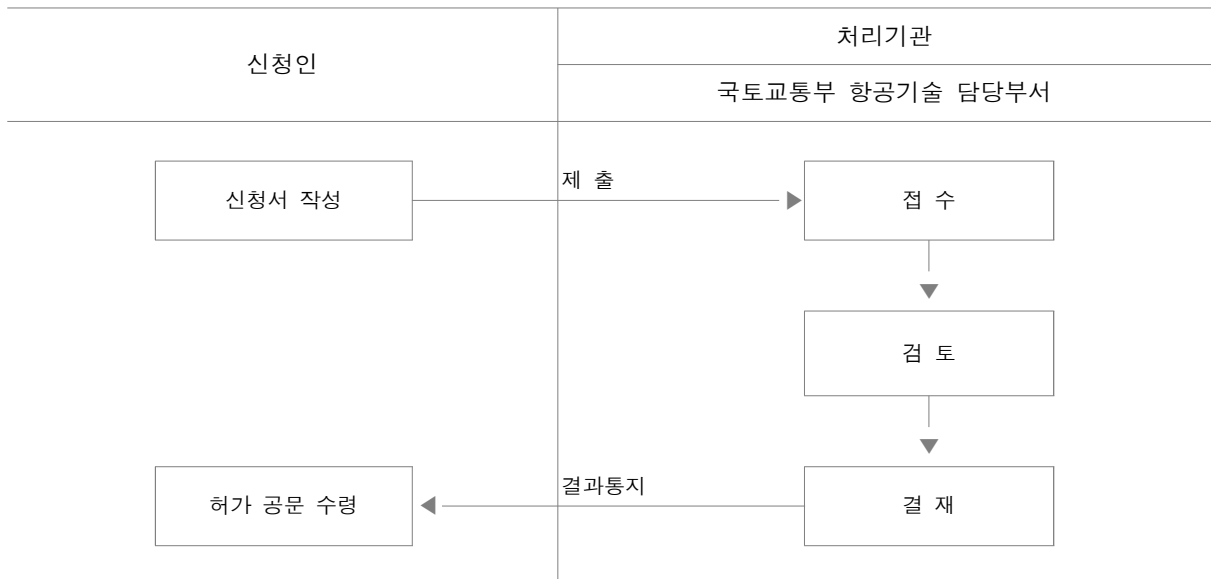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설계 개요서, 설계도면, 부품표 및 비행장치의 <b>제원 등</b>) 1부</li> <li>2. 경량항공기 시험비행계획서(시험비행 기간, 장소 및 시험비행 점검표 등) 1부</li> <li>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b>서류</b> 1부</li> <li>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수준을 입증하는 서류(지상성능시험 결과, 안전대책 등) 1부</li> <li>5. 경량항공기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b>서류</b> 1부</li> <li>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합니다.) 각 1매</li> <li>7. 그 밖에 시험비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b>서류</b> 1부</li> </ol>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sup>2</sup>) 또는 중질지(80g/m<sup>2</sup>)]

처 리 절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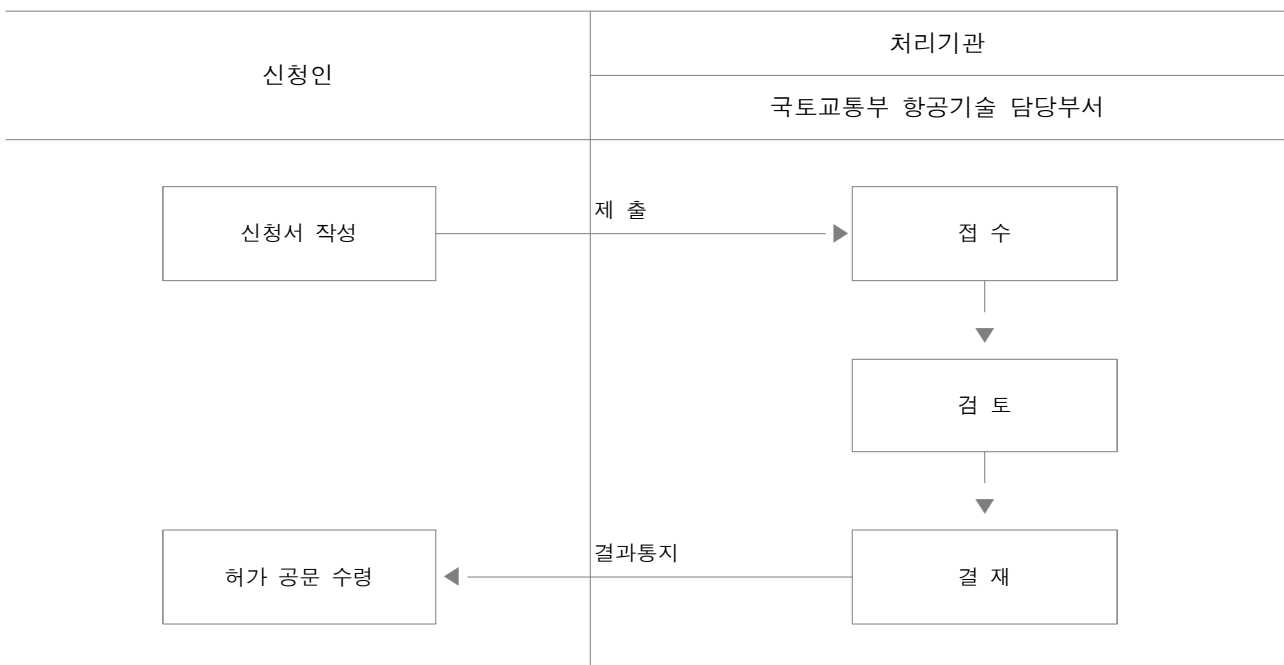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행경력 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비행경력 증명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 (생 략)</p> <p>1. ~ 3. (생 략)</p> <p>&lt;신 설&gt;</p>	<p>제20조(형식증명 등을 위한 검사 범위 및 대상)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서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 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p> <p>1.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 색·구조 업무</p> <p>2.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업무</p> <p>3.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 구급활동 업무</p> <p>4.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수 산업 업무</p> <p>5.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 업무</p> <p>6.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달 고 운반하는 업무(헬리콥터만 해당한다)</p> <p>7.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제 업무</p> <p>8.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 업무</p>
<p>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생 략)</p>	<p>제27조(형식증명승인을 위한 검사 범위) ① (현행과 같음)</p>

1. (생략)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② (생략)

1. ~ 2. (생략)
-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항공기

2. ~ 3. (생략)

-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2.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품질 및 제작관리체계에 대한 검사. 다만,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제작증명 또는 동등한 증명을 받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 제36조(예외적으로 감항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법 제23조 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법 제5조에 따라 임대차 항공기의 운영에 대한 권한 및 의무이양의 적용 특례 대상 항공기

2. ~ 3. (현행과 같음)

- 제37조(특별감항증명의 대상)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2항에 따른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에 사용되는 경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에 사  
용되는 경우  
다.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구조  
· 구급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라. 씨앗 파종, 농약 살포 또는  
어군(魚群)의 탐지 등 농·수  
산업에 사용되는 경우  
마. 기상관측, 기상조절 실험  
등에 사용되는 경우  
바. 건설자재 등을 외부에 매  
달고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헬리콥터만 해당한다)  
사. 해양오염 관측 및 해양 방  
제에 사용되는 경우  
아. 산림, 관로(管路), 전선(電  
線) 등의 순찰 또는 관측에 사  
용되는 경우

5. (생 략)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  
급) ① ~ ② (생 략)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5. (현행과 같음)

제52조(소음기준적합증명서의 발  
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제1항  
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소음적합증명서  
를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  
의 소음기준적합증명 재발급 신  
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

<신 설>

제77조(비행경력 증명) ① 제76조제1호에 따른 경력 중 비행 경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 자격증명을 받은 조종사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신 설>

<신 설>

<신 설>

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적합증서의 발급기록을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77조(비행경력 증명) ① -----  
-----  
-----.

1. -----조종사는 다음 각 목의 비행경력

가. 본인이 보유한 자격증명 업무 범위 내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나.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다. 사업용 조종사 또는 부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2.·3. (생략)

② (생략)

<신설>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 ③ (생략)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비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 중 국내에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자 또는 두 나라 이상을 운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별지 제73호서식의 항공기 입출항 신고서(GENERAL DECLARATION)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

비행경력 : 비행이 끝날 때마다 해당 기장이 증명한 것

라. 법 제37조에 따른 자격증명의 한정(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받으려는 사람의 비행경력: 비행이 끝날 때마다 그 조종교관이 증명한 것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교관은 제98조에 따라 조종교육증명을 발급받은 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조종교관으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182조(비행계획의 제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양식에 따른다)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⑤ ~ ⑦ (생략)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 증 등) ①(생략)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경량항공기에 대한 소개서
2. 경량항공기의 설계가 경량항공

관련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

1. 2.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84조(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인 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08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0호서식의 경량항공기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경량항공기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경량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시험비행을 위한 운용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계획서

기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경량항공기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경량항공기 사진(전체 및 측면 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시험비행계획서

③ ~ ⑥(생략)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① (생략)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같은 조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비

3. (현행과 같음)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5. 경량항공기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험비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 ⑥(현행과 같음)

제304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4조 전단에 따른 시험비행 등을 위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허가 신청서에 해당 초경량비행장치가 같은 조 전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시험비행을 위한 운용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행장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소개서
2. 초경량비행장치의 설계가 초경량비행장치 기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설계도면과 일치되게 제작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4. 완성 후 상태, 지상 기능점검 및 성능시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전체 및 측면사진을 말하며, 전자파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각 1매
7. 시험비행계획서

③ (생략)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있음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초경량항공기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 계획서
3. (현행과 같음)
4. 신청인이 제시한 시험비행 범위 안에서 안전 수준을 입증하는 서류
5.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을 수행하기 위한 수준의 조종절차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한 정비방법을 명시한 서류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험비행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현행과 같음)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의 준수사항) ①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해서는 제4호 및 제5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신설>

9. (생략)

② ~ ⑥ (생략)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법 제13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 준수사항) ①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지표면 또는 장애물과 가까운 상공에서의 360도 선회 등 조종력을 회복할 수 없는 안전고도 미만으로의 비행 행위(제5조제3호에 따른 패러글라이더만 해당한다)

9.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3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에 대한 안전개선명령) -----  
-----  
-----  
-----  
-----

1.·2. (현행과 같음)

3. ----- 한국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